

준법감시인(또는 위험관리책임자) 임면 보고

문서번호: 20-06-08

2020. 06. 08.

수 신 금융감독원장

참 조 (담당 부서장)

제 목 준법감시인(또는 위험관리책임자) 임면 보고

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2항,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」 제14조제1항에 따라 2020. 05.31. 개최된 이사회에서 불임과 같이 준법감시인(또는 위험관리책임자)을 선임(또는 해임)하였음을 보고합니다.

- 붙 임 : 1. 준법감시인(또는 위험관리책임자) 선임(또는 해임) 내용 1부.
2. 준법감시인(또는 위험관리책임자) 선임 심사표 1부. 끝.

코펜자산운용(주) 대표이사 박재충



작 성 자 : 안수영(이사)

전화번호 : 02-2135-3271

(붙임 1)

준법감시인(또는 위험관리책임자) 선임(또는 해임) 내용

1. 준법감시인(또는 위험관리책임자) 선임

성명 (한자)	직위	임원 여부	주민등록번호 (앞의 6자리)	선임 일	임기 (만료 일)	업무 범위	겸직 직위 및 업무	주요경력 ¹⁾	자격요건 확인결과
오한영 (吳漢瑛)	준법 감시 인	임원	630216	2020. 05.31	2022. 05.31	준법 감시 업무	없음	1990년1월 ~ 2001년9월 대우증권국제부 2001년10월 ~ 2009년4월 메리츠증권 IB사업부 2013년9월. ~2015년 1월 대우증권 홍콩현지법인 2017년10월 ~ 2019년7월 Noroo Holdings(Hongkong)	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

주 1) 주요 경력란에는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1조제2항에서 정하는 학력 또는 기관에서의 근무경력과 최근 5년간의 근무경력을 연월 단위로 기재

2. 준법감시인(또는 위험관리책임자) 해임



성명 (한자)	주민등록번호 (앞의 6자리)	선임일	해임일	해임사유 ¹⁾	비고 ²⁾
공만규 (孔晩奎)	600805	2018.04.01	2020.05.31	사직서	5월31일 이사회를통하여 오한영을준법감시인 으로 선임함.

주 1) 해임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이사회 결의서, 사직서 사본 등) 첨부

2) 향후 준법감시인(또는 위험관리책임자) 선임일정 및 절차 등

(붙임 2)

준법감시인 선임 심사표

성명 (한자)	오한영(吳漢瑛)	직위	부사장(준법감시인)
심사항목		심사결과	비고
1.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최근 5년간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, 그 밖에 다음 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인 없을 것 1) 해당 임직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 2)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이 아닌 자로서 금융관계법령에서 조치 권한을 가진 자		해당사항 없음	
2. 법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*. 다만, 각 목(법 제26조제1항제2호라목 후단의 경우는 제외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6조제1항제2호라목 전단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.		해당사항 없음	
3. 법 제29조 및 영 제2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을 것		해당사항 없음	
종합 의견 상기 오한영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6조, 법제29조,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4조 등에서 정하는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바, 코펜자산운용(주) 준법감시인으로 선임 함에 결격 사유가 없음.			
2020년 06월 01일			
코펜자산운용(주) 준법감시인 오한영 			
코펜자산운용(주) 대표이사 박재충 			

*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 중 해당하는 목을 기재하고, 관련 경력을 상세하게 기재

【첨부서류】

1. 이사회 결의서
2. 금융회사 임원 약력표 등을 포함한 이력서(사진부착 및 본인 확인)
3.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기관,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, 그밖의 감독·검사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(감봉요구)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인사기록카드, 감독기관·소속기관의 확인서 등)
4.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1조제2항에서 정하는 이전 및 현재 근무처의 근무확인서(경력증명서 등)
5. 외국인의 경우 금융법규상 준법감시인의 결격사유에 준하는 이전 및 현재 근무지의 관련 법규상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소속기관 또는 이전 근무처의 확인서 등)
6. 기타 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본인 및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)